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공무상 부상

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출근·퇴근·부임·귀임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되, 그 이탈 또는 중단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부상으로 본다.

-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2)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3) 공무원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4)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5) 공무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라.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직업성 암

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의 질병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